#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53

제출연월일 : 2021. 6. 3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○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및 관련 전문가 위촉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O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개정(안 제3조제1항, 제4항)
  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: 10명 이내 → 15명 이내
  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세분화
- O 남녀 성비를 고려한 위촉직 위원 구성(안 제3조제1항)
  -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
- 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# 4. 신·구 조문대비표 :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'21. 4. 20. ~ 5. 1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(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 : 원안의결

##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10명"을 "15명"으로, "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"를 "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4호"를 "제6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변호사, 의사또는 교사자격"을 "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  - 나.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
- 3.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

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4.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- 5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·재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·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제3조(구성) ① -----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----- 15명 -----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---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다. 과하지 않도록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제1호부 -- 제6호-----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. 1.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하는 사람 <u>가. 「유아교육</u>법」 제22조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 <u>또는 「초·중</u>등교육법」 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격을 갖춘 사람 나.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 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 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 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

- 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
-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 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 당하였던 사람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4. (생략)

- 2. 변호사, 의사 또는 교사자격 2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-----
- 3.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3.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 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
  - 4.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 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 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  - 5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6.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 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7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#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아동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1.3.2.] [대통령령 제31516호, 2021.3.2. 타법개정]

- **제13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**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 위원회"라 한다)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 <개정 2018. 3. 6., 2020. 9. 29.>
 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8. 3. 6.>
  -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8. 3. 6.>
  -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6. 11., 2018. 3. 6., 2020. 9. 29.>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또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    - 나. 시·도 교육청(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)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 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  - 2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3.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4.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  - 5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6.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7. 그 밖에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8. 3. 6.>
  -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 3. 6.>
 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3. 6., 2020. 9. 29.>